

인천광역시서해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hae.go.kr>

선

기관의장

람

제2011호

2026. 7. 6.(월)

차 례

고 시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133호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

인가 고시 ——— 1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137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 ——— 3

공 고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66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————— 4

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2026-133호

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
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신고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7. 6.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나. 명칭: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치: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494-2번지 외 30필지
- 나. 면적: 8,052.1m²

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가. 착수예정일: 미정
- 나. 준공예정일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합명칭: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대웅)
- 나. 사무소 소재지: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23번안길 19, 2층

5.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내용

- 조합장의 주소 이전

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2026-137호

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7. 6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○ 고시내용: 총 1건(건물번호 부여 1건)

구분	위치	도로명주소	고시일	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
부여	청라동 46-27	청라한대로173번길 9-3 (청라동)	2026.7.6.	신축	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큰 시내를 이르는 말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해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하시거나 서해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seohae.go.kr>)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-1665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(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6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○ 공고기간: 2026. 7. 06. ~ 2026. 7. 20. (15일간)

○ 공고내용

1. 행 정 처 분 제 목	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			
2. 대상차량	등록번호	91라3691 등 8건(붙임 참고)			
	차 명				
3. 운 행 정 지 사 유		소유자의 요청 등			
4. 법 적 근 거		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5. 관 할 관 청	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해구청	담당부서	차량민원과
		주소	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299(심곡동) (☎ 032-560-4874, FAX 032-560-2793)		

○ 유의사항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(해제)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합니다.

나.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(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)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또한 같은 법 제81조(벌칙) 및 제82조(벌칙)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제13조(말소등록)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(벌칙)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문 의 처: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4874)

○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명	운행정지명령 등록일
1	91라3691	포터 II(PORTER II)	조*현	2026.06.29
2	177버8703	Mercedes-Benz GLE400 d 4MATIC Coupe	하*****)	2026.06.26
3	169하2903	팰리세이드(PALISADE)	메*****)	2026.06.24
4	239보1904	Mercedes-Maybach S500 4Matic	이*정	2026.06.22
5	50조8790	싼타페(SANTAFE)	김*	2026.06.15
6	175나5443	BMW X7 xDrive40i	메*****)	2026.06.15
7	230무2949	쥘 랭글러 사하라 4xe	케***** 사	2026.06.11
8	46서1818	Mercedes-Benz EQE350 +	하*****)	2026.06.11